

학비 대출(FEE-HELP) 정책

Approving Authority	Principal
Responsible Officer	The Registrar The College Principal
Version	5.1
Next Scheduled Review	October 2025
Related Legislation and Regulations	https://www.education.gov.au/higher-education-administrative-information-providers-march-2020/31-fee-help
Associated Documents	Refunds and Re-crediting of Fees Policy

1 범위

ACCS(Australian College of Christian Studies)의 Higher Education 과정에 등록한 각 학생은 관련 법률의 자격 조건에 따라 FEE-HELP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

이 정책은 현금 지불하는 학생 혹은 Vocational 학생 또는 유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.

2 목적

HELP의 기본 원칙은, 상업적 대출 약정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대출을 통해, 학생들이 고등 교육으로의 진입에 대한 주요 재정적 장벽을 제거한다는 데에 기초를 둔 것이다. HELP 부채는 TAX System에 따라 최저 수입 수준에 도달할 때 상환한다.

3 정의

FEE-HELP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호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 제도이다. 승인된 학교와 승인된 학습 과정을 수강하고 다음에 나열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제공된다.

- 호주 시민권자이고 호주에서 코스의 적어도 일부를 공부하는 사람;
- www.studyassist/help-loans/non-australian-citizens에 나열된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뉴질랜드 특별 카테고리 비자 소지자 또는 영구 인도주의 비자 소지자

4 정책

FEE-HELP 지원을 요청하는 학생에게는 FE-HELP 지원 요청 양식과 해당되는 학습 코스 등록에 관한 FE-HELP 정보 책자가 제공되어질 것이다. 이 양식은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학비 전액을 지불하기 위해 정부에 대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.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또한 그들의 수업료의 일부를 그들의 제공자에게 미리 지불하고 그 잔액을 FEE-HELP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.

"FEE-HELP 지원 요청서" 양식을 작성한 모든 학생은 FEE-HELP 채무가 있는 각 과목의 센서스 날짜로부터 28 일 이내에 Commonwealth Assistance Notice가 제공될 것이다. 이 통지는 센서스

날짜에 맞추어 등록된 과목과 FEE-HELP 대출금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. 이 양식을 완성했지만 학교에 학비를 직접 지불했다면 부채가 없는 Commonwealth Assistance Notice 가 제공될 것이다.

만약 그 통지가 잘못되었다면 학생은 학교에 서면으로 14 일 안에 수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

1. 센서스 날짜 그날이나 이전에 과목이나 코스를 중단할 경우

만약 학생이 FEE-HELP 요청을 완성하였는데 센서스 날짜나 그 전에 과목이나 코스를 중단할 경우 그 과목들에 대해서는 FEE-HELP 부채가 발생하지 않는다. 참고: 학생이 아래의 Paragraph 3 에 설명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이 수업에 참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목 등록 주간 이후에는 과목당 \$100 의 과목 중단 벌금이 부과됩니다.

2. 센서스 날짜 이후에 과목이나 코스를 중단할 경우

만약 학생이 FEE-HELP 요청을 완성하였는데 센서스 날짜 이후에 과목이나 코스를 중단할 경우 그 과목들에 대해서는 FEE-HELP 부채가 발생한다.

학교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학교에서는 FEE-HELP balance 를 re-credit 으로 인정하여 FEE-HELP 부채가 센서스 날짜 후에 제거될 것이다(FEE-HELP balance 에 대한 Re-Crediting 정책에 대하여 아래의 Paragraph 3 섹션들을 참고하시오).

3. FEE-HELP balanced 에 대한 Re-Crediting 과 검토 과정정책

- a. 이 정책은 오직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적용된다:
 1. 본 대학의 승인된 코스의 과목을 등록했을 때
 2. 그 과목에 대한 FEE-HELP 보조 요청을 완성하였을 때
 3. 그 과목의 센서스 날짜 이후일 때
 4. 학생이 그 과목이 요구하는 바를 마치기가 불가능할 때
 5. 그리고 그 과목을 마치기가 불가능한 것이 특수 상황이라고 여겨질 때.
- b. 위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학생은 신청자의 FEE-HELP balance re-crediting 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.
- c. FEE-HELP balance re-crediting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본 대학의 Registrar 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d. FEE-HELP balance re-crediting 신청은 아래에 열거한 특수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하거나 존재했다는 주장을 입증해야하는데 그 입증은 권한 있는 사람이 제공한 독립적인 문서 증거로 수반되어야 한다:
 1. 의료 상황; 또는
 2. 가족 상황; 또는
 3. 개인 사정; 또는
 4. 고용 관련 상황; 또는
 5. 코스 관련 상황.
- e. FEE-HELP balance re-crediting 신청은 중단한 날짜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, 혹은, 만약 그 학생이 중단하지 않은 경우, 해당 과목이 수행되었거나 수행될 예정이었던 그 학기 종료 후 12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. 학생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대학이 충족하는 경우, 본 대학은 재량에 따라 이 요구 사항을 포기할 수 있다.

- f. Registrar 는 FEE-HELP balance re-crediting 을 위한 각 신청서를 그 요소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.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(위의 paragraph 3.d 참조)이 신청자에게 적용되거나 적용되었음을 나타내야 한다:
1. 신청자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;
 2. 센서스 날짜 이후까지 신청자에게 완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; 그리고
 3. 학생이 공부하는 과목을 시작했거나 수행하게 된 기간 동안 신청자가 그 과목의 요구 사항을 완료하는 것을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.
- g. Registrar 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자의 상황이 신청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것이다 :
1. 합리적인 사람이 이것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신청자의 작위나 부작위에 기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; 그리고
 2. 그 상황이 특이하거나 비상식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경우.
- h. Registrar 는 그 과목의 센서스 날짜 또는 센서스 날짜 이후까지 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신청자에게 완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에 충족할 것이다:
1. 센서스 날짜 이전에 발생하였으나, 그러나 그 날짜 이후에 더 악화됨; 또는
 2. 센서스 날짜 이전에 발생하였으나, 그러나 완전한 효과 또는 규모가 그 날짜 이후에 또는
 3. 그날 이후; 또는
 4. 센서스 날짜 또는 그 이후에도 명백하지 않은 상황.
- i. Registrar 는 학생에게 통지하기 전에 승인을 받기 위해 교수 임원의 회의에 결정을 표명해야 한다.
- j. Registrar 는 FEE-HELP balance re-crediting 신청서를 서면으로 받은 후 1 개월 이내에 서면 응답을 제공해야 한다.
- k. 만약 FEE-HELP balance re-crediting 에 반대하는 결정이 발생한 경우, Registrar 는 그 결정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그 결정에 대한 검토를 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권리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줄 것이다. Registrar 의 재량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l. FEE-HELP balance re-crediting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한 검토 요청은 교장에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검토 신청이 이루어진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.
- m. 교장은 신청서 접수 후 14 일 이내에 결정 검토 신청서 접수를 받았음을 서면으로 알릴 것이다.
- n. 교장은 대학에서 발표한 '검토 절차: FEE-HELP 정책의 re-crediting 정책에 의해 Registrar 가 내린 결정의 일관성을 검토하고 이 정책의 관점에서 검토 신청에 대한 서면 사유에 포함된 정보를 고려할 것입니다.
- o. 교장은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:
1. 그 결정을 확인한다. 또는
 2. 그 결정을 변경한다. 또는
 3. 그 결정을 보류하고 새로운 결정으로 대체한다.

교장의 결정은 Registrar 의 결정을 대체될 것이다.

- p. 교장은 Registrar 의 결정에 대해서 검토한 결정을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알리고 검토 요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. 서신에는 신청자가 행정 항소 재판소(AAT)에 항소할 권리가 있고, AAT 의 연락처와 항소 비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이다.

4. 행정 항소 재판소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(AAT) 의 재심

개인은 FEE-HELP balance re-crediting 을 거부하기로 한 대학의 결정에 대한 재고를 AAT 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에 대학에 제공하지 않은 추가 정보를 AAT 에 제공할 수 있다(대학의 검토자 포함).

교육부(DET) 장관 또는 그 대리인이 AAT 에 앞서 사건에 대한 응답자가 될 것이다. DET 가 AAT 로부터 1975 년 행정 항소 재판소법(AAT 법) 섹션 37 에 따라 재심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장관은 28 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AAT 에 제출해야 한다:

1. 사실에 관한 중요한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그러한 조사 결과의 근거가 된 증거 또는 기타 자료를 언급하고 결정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; 그리고
2. 검토자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고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한 검토와 관련이 있다고 검토자가 간주하는 다른 모든 문서 또는 문서의 일부.

AAT 의 연락처는 전화 (02) 9391 2400, <http://www.aat.gov.au> 또는 55 Market Street, Sydney NSW 2000 으로 연락할 수 있다.

교장은 AAT 의 결정에 따라 FEE-HELP 환불 요청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다.

5 참조

FEE-HELP Guidelines 2017 <https://www.legislation.gov.au/Details/F2020C00400>
<https://www.studyassist.gov.au/help-loans/fee-help>